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5-016호

「산업융합촉진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결과 공고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1. 제품명 : 푸시풀 도어록
2. 모델명 :
 - 종류·등급·호칭 또는 모델 : 튜블러형 20형
3. 적합성 인증기관: 산업통상자원부
4. 인증일: 2025. 1. 10.
5. 안전성 등을 위한 조건:
 - 「산업융합촉진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 적합성 인증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고려한 표준 등이 개정 또는 폐지되거나 적합성 인증 기준의 개정 필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적합성 인증의 효력 유지 여부, 적합성 인증 기준의 개정 및 폐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기존 KS 인증의 사후관리 체계에 따라 정기심사 등을 받아야 함
6. 「산업융합촉진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근거 법령:
 - 「산업표준화법」 제15조
7. 참고사항:
 - 본 인증서는 해당 제품의 시장출시 지원을 위해, 상기 표기된 “허가등이 의제되는 근거 법령”에 의거하여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제도를 통해 마련한 제품심사기준(적합성 인증 기준) 및 인증 심사 기준에 적합함을 의미함
 - 본 제품을 위해 마련된 적합성 인증 기준은 KS B 6411(원통형, 튜블러형 및 상자형 도어 록)의 요구사항을 푸시풀 도어록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마련함

끝.